

(첨부1)

## 표준 약관 제정 주요내용

### I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제정

#### 1 제·개정 사유

- 퇴직연금에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개정('18.9.7.)
  - 편입 가능 원리금 보장상품 범위에 저축은행 예·적금 추가
    - \* ① 저축은행 신용평가등급 : 투자적격(BBB-) 이상, ② BS자기자본비율: 기준 자기자본비율7~8% 이상
- ⇒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(이하'특약') 제정하고 정기예금 규정을 개정하여 취급근거 마련

#### 2 주요 내용

- 계약기간(특약 제3조, 정기예금규정 제32조)
  -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(은행 계약기간 준용)
-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(특약 제7조, 정기예금규정 제37조)
  - 일반적인 정기예금의 경우와 달리 일정 사유 해당시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지급
    - \*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일정요건 충족시 분할지급 횟수 제한 배제(특약 제8조)
  -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횟수제한을 배제하도록 규정
    - \* 일반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포함 4회 이내에서 분할지급 가능

#### 3 시행일 : '18년 10월 22일

\* 표준약관 시행일은 표준약관의 개정일을 의미하며, 개별저축은행의 약관 시행일과 별개임